

영어영문학과 선거 시행세칙

영어영문학과 회장단 선거 시행세칙

제 1장 선거시행세칙의 원칙

- 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회장단 선거를 민주주의 구현의 장으로 만들어간다.
- 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 다. 본 시행세칙에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조치 등 그에 합당한 제재가 주어지게 된다.

제 2장 선거권자

- 가. 선거권은 피선거권과 분리될 수 없다.
- 나. 선거권자는 선거일 당일 현재 재적 중으로 확인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학부생을 말하며 이중전공자를 미포함한다.

제 3장 입후보자 자격 및 구비서류

제 1조 입후보자 자격

- 가. 2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 나. 영문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2조 출마형태

정후보 1인과 부후보 2인의 선거운동본부 형태를 갖추어 출마한다. 필요 시 영문선관위의 허가 하에 최대 4인까지 선거운동본부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조 구비서류와 규제사항

- 가-1. 입후보자 등록원서
- 가-2.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원서
- 나. 추천인 서명서
- 다.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제 4장 영어영문학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문선관위)

제 1조 구성

- 가. 영문선관위원장은 영어영문학과 회장단 중 1인이 맡는다. 단, 영문과회장단의 결위 시 영문과 집행부가 집행부원 중 1인을 선임한다.
- 나. 영문선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재적생(선거 당일 현재)중에서 영문선관위원장이 추천하여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에서 임명한다.

제 2조 역할

가. 영문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다.

나. 영문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영문선관위 의결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한다. 의결이 필요할 경우 의결방식은 전원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결정에 따른다.

다. 영문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 일정을 홍보 및 선전한다.

라. 영문선관위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의 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

- 금권 선거를 행하는 자
- 타인의 선거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자
-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

마. 선거 2주일 전에 선거와 이에 따른 제반 일정을 공고한다.

바. 투표 및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관련 실무라 함은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투표소 설치, 투표함 관리, 개시판 설치, 개표 진행 등을 일컫는다.)

사. 영문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은 문과대 선관위로 이월하여 결정한다.

제 5장 선거운동 및 유세

제1조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당선을 얻는 행위다.

제2조 구성

선거 유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위당관 215호 영어영문학과 게시판에 해당 후보의 유세 포스터를 게시(B4규격)

나. 위의 유세포스터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자유로운 곳에 게시(B4 규격)

다. 영어영문학과 커뮤니티에 본인의 유세 글을 남기는 것

제3조 추천인 서명

가. 추천인 서명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 후보자 등록의 과정이므로 세칙에서 일정한 규칙을 둔다.

나.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은 강의실을 방문하여 서명을 받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강의실 유세 및 개별 연락을 통한 유세는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 모두 가능하며, 선거운동본부 소개 및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라. 연서판은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 이름, 출마의 변, 으뜸구호 및 정책의 기본방향과 서명용지(영문선관위에서 작성 배포한 것)로 구성한다. 연서판의 내용은 영문선관위에서 공고한 기일까지 작성하여 제출 후 심의 받는다.

제4조 기타사항

이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영문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제6장 투표

제1조 기간

투표 기간은 영문선관위에서 당 해의 사정에 따라 2주 전에 공고한다.

제2조 투표자 확인

투표권자에 대한 확인은 영어영문학과 명부 확인으로 한다.

제3조 투표 방식 및 절차

가. 영어영문학과 선거권자는 전자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를 한다.

나. 전자 투표 페이지에는 으뜸구호, 이름, 소속, 학년, 후보자 사진, 공약 자료집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장 투표기간 연장

투표인원이 150인을 넘지 않는 경우, 영문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투표기간을 단 하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개표

제1조 개표 시작, 장소

개표는 투표가 끝난 일 (연장된 경우 하루 뒤) 투표함의 완전 도착 후 영문선관위의 참석 후 봉인에 이상이 없을 때, 개표하기 시작한다. 장소는 영문선관위에서 지정한 곳에서 실시한다.

제 2조 무효표

투표자의 의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무효표로 인정된다.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은 무효처리하고 선에 걸린 것은 비율로 따져 영문선관위 판단으로 표로 인정한다.)

제 9장 당선 확정

당선 확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총 투표 인원이 150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 경합 선본의 경우 절대 득표 수 차이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10장 당선 공고 및 이의 제기

제1조 당선 공고

영문선관위는 개표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2조 이의제기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관위가 지정한 기일까지 영문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1장 당선자의 의무 및 임기

제 1조 당선자의 의무 및 임기

가. 당선자는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나. 임기는 당선확정 공고일부터 다음 학생회장단의 당선까지이다.

다. 학생회장, 부회장은 1학기-2학기 1년 구성의 단임으로 한다.

라. 회장 또는 부회장이 군 휴학, 고시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장 혹은 부회장 직책을 사임하고 봉사 장학금은 학생회에 기부해야 한다.

마. 회장단 중 한 자리가 공석이 생기면 남은 두 사람이 임기를 이어간다. 만일 두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부회장 한 명만 남은 경우 그 부회장에게 회장 역할을 승계받을 지 여부를 물은 후 남은 자리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조 기타사항

가. 이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영어영문학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나. 본 세칙에 언급 되지 않은 부분은 상위 기구의 선거 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12장(선거 시행세칙의 개정)

제1조 (세칙 개정안의 상정)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단이 발의한 경우

나.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운영위원의 2/3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다. 본회 재학생 회원 1/10 이상의 연서를 통해서 발의한 경우

제2조 (세칙개정안의 공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총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 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가.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다.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3조 (세칙 개정안의 의결)

재학생 회원 1/10 이상의 참여와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4조 (공포)

개정 기준을 충족하여 본회의 회칙이 개정된 경우,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 (효력)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